

#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92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8년 10월 17일  
발 의 자 : 이병도, 서윤기, 김용연,  
김혜련, 김동식, 김화숙,  
이영실, 이정인, 봉양순,  
오현정, 권순선, 유정희,  
채유미, 송명화 의원(14명)

## 1. 제안이유

- 핵가족화 심화, 여성 경제활동 인구 증가 등 양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나 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, 이에 대한 공공과 지역사회에서의 대응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.
- 이에 따라 지금까지 영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지역 중심 돌봄 서비스들을 통합·확대하여 “온마을아이돌봄”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,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서울을 조성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온마을아이돌봄 정책 마련 및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 
(안 제3조)

- 온마을아이돌봄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 5조)
- 시장이 돌봄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, 사업 수행 주체들에게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(안 제6조)
-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, 사업 수행 주체들에게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(안 제6조)
- 시장이 돌봄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 시설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11조 ~ 안 제7조)
-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설치 및 구성, 협의회 기능, 구성, 위원의 임기, 회의운영, 위원의 제적·기피·회피 및 해촉, 수당지급, 운영세칙에 대해 규정함 (안 제9조 ~ 제16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아동복지법」, 「아이돌봄 지원법」, 「영유아보육법」

나. 예산조치 :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##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아동복지법」 및 「아이돌봄 지원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아이를 보호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아이”란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 - 가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
  - 나.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만 12세 이하 아동
  - 다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
2. “온마을아이돌봄”이란(이하 “돌봄”이라 한다)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·양육,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, 급·간식, 맞춤형 정보·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.
3. “온마을아이돌봄시설”이란(이하 “돌봄시설”이라 한다) 돌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.

**제3조(시장의 책무)**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돌봄에

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** 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5조(기본계획 등)** ① 시장은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돌봄 지원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
2. 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
3.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
4.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·평가
5. 그 밖에 시장이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**제6조(돌봄 지원 사업)** ① 시장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,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영유아의 건전한 놀이공간 제공 및 부모의 자조모임 지원 등 영유아 돌봄사업
2. 「아이돌봄 지원법」에 근거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

3.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부모 및 보호자 등에게 맞춤형 육아 정보 및 상담 제공 사업
  4. 「아이돌봄 지원법」에 근거한 아이돌보미 사업
  5. 시의 공공시설 등 공간을 활용하여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 대상 방과후 돌봄,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프로그램의 제공 등 초등돌봄 사업
  6. 「아동복지법」에 근거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
  7. 그 밖에 돌봄지원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
-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치구, 비영리법인 및 기관, 비영리단체 등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제7조(돌봄시설의 설치·운영)** 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시장은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봄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④ 시장은 돌봄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⑤ 제2항에 따라 돌봄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, 부지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해당 돌봄시설의 최초 운영권을 줄 수 있다.

- 제8조(지도·점검)**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시설의 운영, 시설 및 설비기준, 안전사고 예방, 종사자 관리,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·

점검하게 할 수 있다.

**제9조(협의회 설치 및 구성)** ① 시장은 돌봄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 등과의 연계·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“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”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협의회는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협의회는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시 행정1부시장, 여성가족정책실장, 평생교육국장
2. 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, 교육정책국장
3.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
4. 자치구, 초등학교 등 유관기관 관계자
5. 돌봄지원 사업관련 단체·기관·학계 전문가

④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한 명을 두되,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.

**제10조(협의회의 기능)** 협의회는 돌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

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
3. 돌봄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11조(위원의 임기)**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회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.  
②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.

**제12조(회의운영)** ① 협의회 회의는 정례회로 연 2회 개최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.  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 
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 등을 통해 기록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13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** ① 협의회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  
1.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

서 같다)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  3.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자문, 연구, 용역(하도급을 포함한다),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
  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·단체 등이 해당 안전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- 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-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**제14조(위원의 해촉)**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 태만, 품위 손상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5. 제13조의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
**제 15조(수당지급)** 시장은 협의회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수당에 대해서는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 16조(운영세칙)** 협의회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**제 17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**제 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 2조(협의회의 존속기한)** 제9조에 따른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.